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 대 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가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낮춘다 해서 이 아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이 만만치가 않다. 잔인하고 흉포한 소년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어 엄벌을 약속하는 방안은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고,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학술 자료를 참고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론몰이식 성급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살”이라고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아동이 심각한 피의자인 경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합리적 바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현행 연령 기준의 유지를 권고하였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형법 체계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 체계이다. 독일에서는 형사미성년자가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를 낮출지 말지를 놓고 30년 이상 학계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14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전개된 소년사법운동을 통해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국친사상이 밑바탕에 깔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거나 완성되지 않았으며, 환경과 주위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기에는 미흡하다.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교도소에 갔다 오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주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낙인으로 대인관계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면 그만큼 형사처분을 받는 소년 숫자가 늘어나고, 어려서부터 전과를 쌓아 나가는 아이들도 늘어난다. 이들이 상습적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과연 소년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년은 성인보다 개선과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년에 대해 형벌을 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년이 교도소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 범죄 성향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선도에 우리 사회의 자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만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강행한다면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저연령 전과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형 범죄자가 늘어나 사회의 선도를 거부할 우려가 크다.

결국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소년들에게 반성과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촉법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들을 갖추며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쏟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오피니언_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 11월14일(월)부터 11월25일(금)까지 2,680개 기관이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간소화되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0개 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업, 단체 등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1,433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올해 훈련은 불시훈련, 복합상황 대비훈련, 국민행동요령 숙달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된다.
 - 이를 위해 훈련 일시, 상황 메시지 등 훈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한다.
 - 그간 사고 통계 및 재난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복합상황 훈련메시지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어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고난도 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위해 지역주민, 학생, 재난 약자 등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을 구성하여 훈련계획, 참관, 평가 등 훈련의 전 단계에 참여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회피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앙평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의 훈련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며,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포상과 재정보조(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Local Food)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

- 탄소중립 등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 기능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Local Food)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며, 에코머니 사용방법 상세내용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 가능
-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그간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해 왔다.



- 이에 더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방향에 따라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 지역농산물(Local Food)은 푸드마일 [(Food Miles, 식료품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수송거리(km)×수송량(t))]이 짧아 탄소배출 영향과 폐기물이 줄어들어 생태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
- 지난 7월에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8~10월에 그린 포스(POS)시스템 개발 및 적용 시험, 사전홍보 등을 거쳐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동 시범사업은 탄소중립·환경보호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 브랜드” 국민제안으로 만든다

- 누리집과 온통광장에서 17일까지 참여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완성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안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 및 인력 보강 및 기준 인건비 신설을중심으로-

김진영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안타까운현실

- 많은 언급과 미부합되는 현실
 -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관련 행사와 논문 및 국가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보고서와 제안서 등에서 무수히 많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됨
-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만 마련
 - 이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를 법률로 정하였기 때문임

2.지방자치법의 형행화(形骸化) 우려

- 형식적 법률화의 두려움(The Devil is in the Details)
 - 상기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몇 단계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서양의 격언처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디테일의 중요성’이 여과없이 드러남
- 실속없는 인사권 : 여전히 집행부 우위
 -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넘어왔으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제와 인력에 대한 통제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과반수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집행부 우위의 법령과 규칙
 - 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그 하부조직은 자율성을 부여받기보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음
 - 의회에 두는 담당관·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업무는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행정입법에 좌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권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시도의회에 독립된 기준인건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필요함
- 집행부에 기울어진 운동장 : 집행부 보다 낮은 직급
 - 구체적인 내용으로 광역의회의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의원정수에 대한 고려 없이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시도라는 지방행정체제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1급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여타의 시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조직과 인력도 4급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한 불합리와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음

• [표 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	---	-----------------	-----------------	---

- *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시행 2022. 4. 19.]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 표 일부내용 수정됨

• 지방의회 지원체계의 현실적 장벽 여전

-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직급별(4급,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정수가 상호 불일치하여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간 불균등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기준’의 경우 의원 수 130명 이상까지의 구간만 있어 156명까지 늘어난 경기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리는 시작점

•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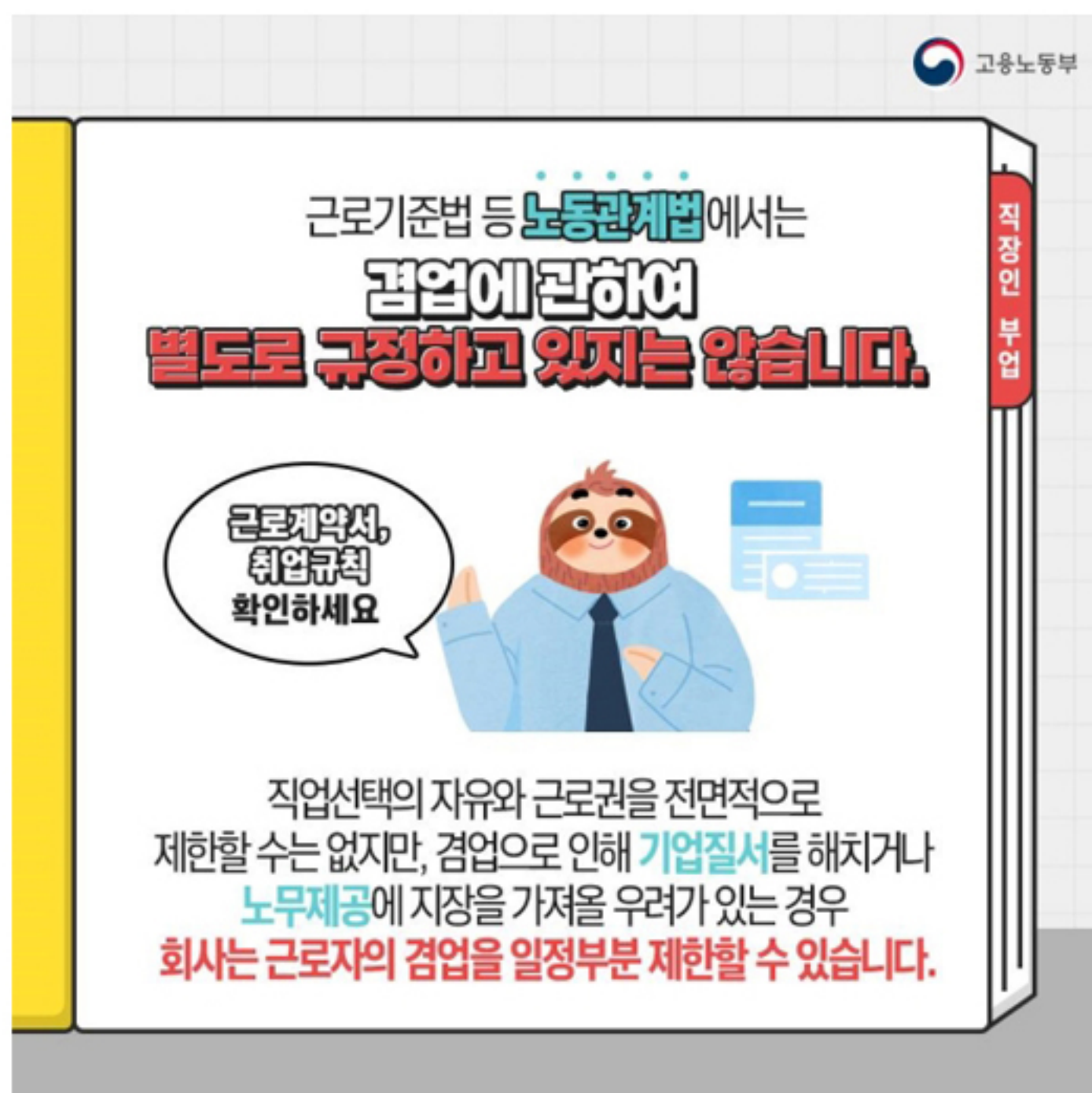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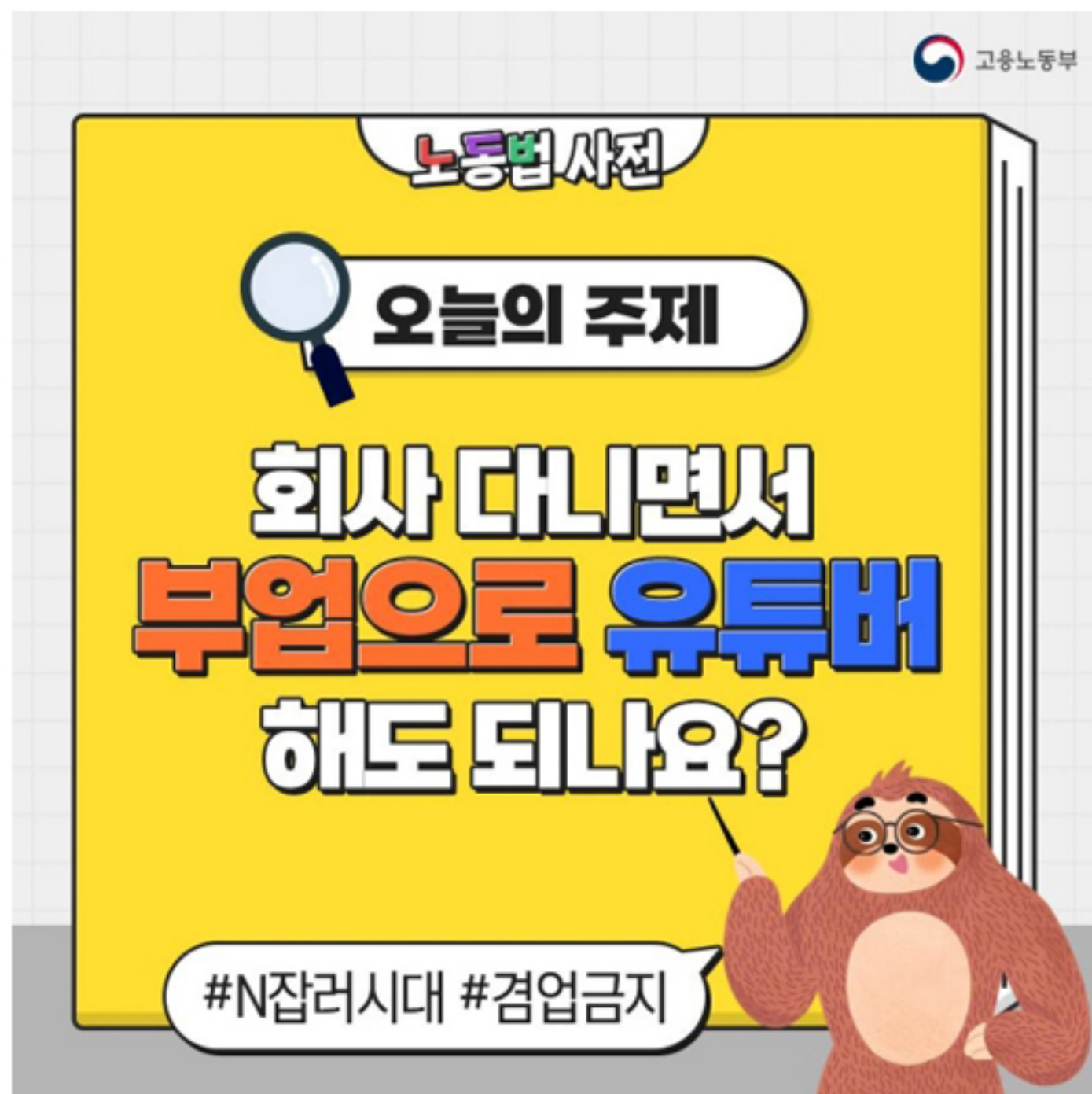
-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권을 보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기구 내의 실·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설치된 실·국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광역의회 사무처의 직급은 같은 규정 「별표4」를 개정하여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고 사무처에 2급 사무부처장과 3급의 실국장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근거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같은 규정 「별표5」를 개정하여 의회사무처에 두는 4급과 5급의 전문위원 정수를 동일하게 하고 지방의원 정수 구간을 늘려 ‘의원정수 150명 이상’에 대한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늘려 지방의회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시대적 사명(The Sign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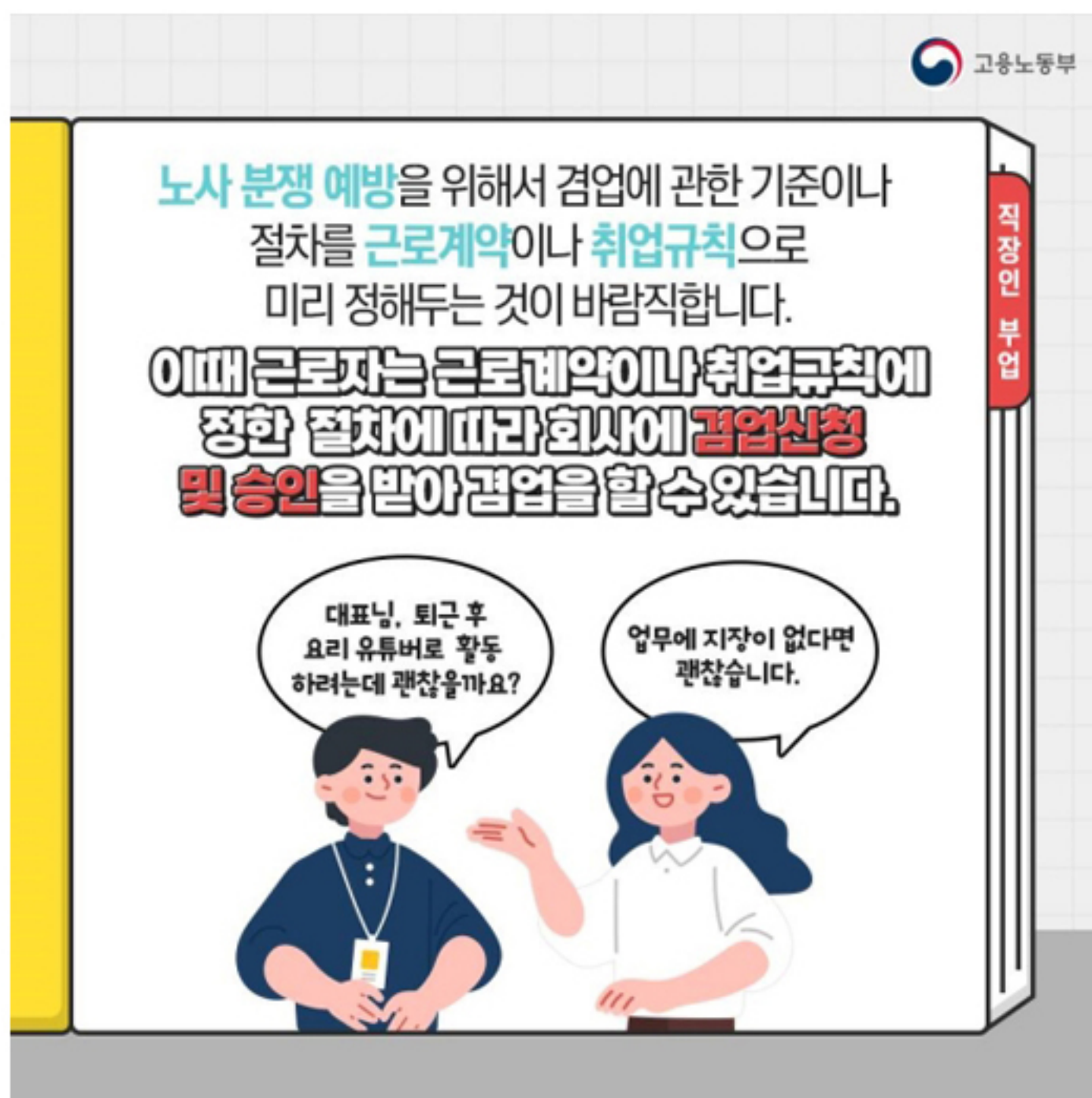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문제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풀어나가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에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비되지 못한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 우리사회의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출처: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_김진영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